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6. 10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(제50조의2)됨에 따라
 -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2조)
- 소위원회구성은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·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·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안 제3조)
- 변명은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안 제7조)
- 부칙의 다른 규칙의 개정사항으로
「구미시의회회의규칙」 중
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

구미시의회 규칙 제 호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소위원회)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·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·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의원"이라 한다.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"심사 대상의원"이라 한다.)

제6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7조(발언 및 변명)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8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통고)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척과 회피)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2조(위임)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개정)

「구미시의회회의규칙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구미시의회 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제76조제1항, 제77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78조제1항·제2항, 제88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91조제1항, 제92조제1항의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각각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3조(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)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.